

1. 대상
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.(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, 군인, 중소기업 근로자 등)
- ※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공급신청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인 세대주 및 세대원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·비속인 세대원 포함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.
- ※ 이주대책대상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을 제외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(청약예금, 청약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, 면적별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 하여야 함.

2. 공급안내

- 사업지 소재지 : 경기도 평택시 동작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3BL
- 공급 세대수 : 총 2,324세대 중 211세대 (85㎡이하 공급세대의 10%범위 이내)

구분	59A	59B	72A	72B	84A	84B	84C	계
기관추천 특별공급	53	15	25	9	28	50	31	211

※ 타입별 세대수 배정은 각 주택형별 건설량의 비율로 배분

3. 공급일정

- 자이 더 익스프레스 (3BL) : 접수 - 2016.05.31(화) 10:00~15:00 / 추첨 및 당첨자 발표 - 2016.05.31(화). 17:00
- 장소 : '자이 더 익스프레스' 견본주택
- ※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4. 당첨자 선정 방법

-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, 해당 기관이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자 및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받은 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함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신청하여야 함.
-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.
- 동일조건일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함.
- 추첨시 주택 형별 추첨순서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 3BL : 59A, 59B, 72A, 72B, 84A, 84B, 84C 순으로 실시.
- 당사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, 동·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.
(동·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-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항)

5. 기타 유의사항

-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가능하며, 동일 세대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(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각 호 제외)
-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.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.
-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.
-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이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.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처리함.(1회 특별공급 간주)
- 기타 본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바람.